

2018. 9. 7. 보도 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제 목 :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 현장검증 실시

- 헌법재판소는 오는 9. 10.(월) 11:00시 아래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1	2016 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 (법무법인 해마루)	부안군 [법무법인 유한 바른]

- 붙임 1 : 관련사건 개요
붙임 2 : 검증기일 진행순서
붙임 3 : 검증해역 지도

문 의	심판사무과 법원사무관 안승환	☎ 02-708-3475
-----	-----------------	---------------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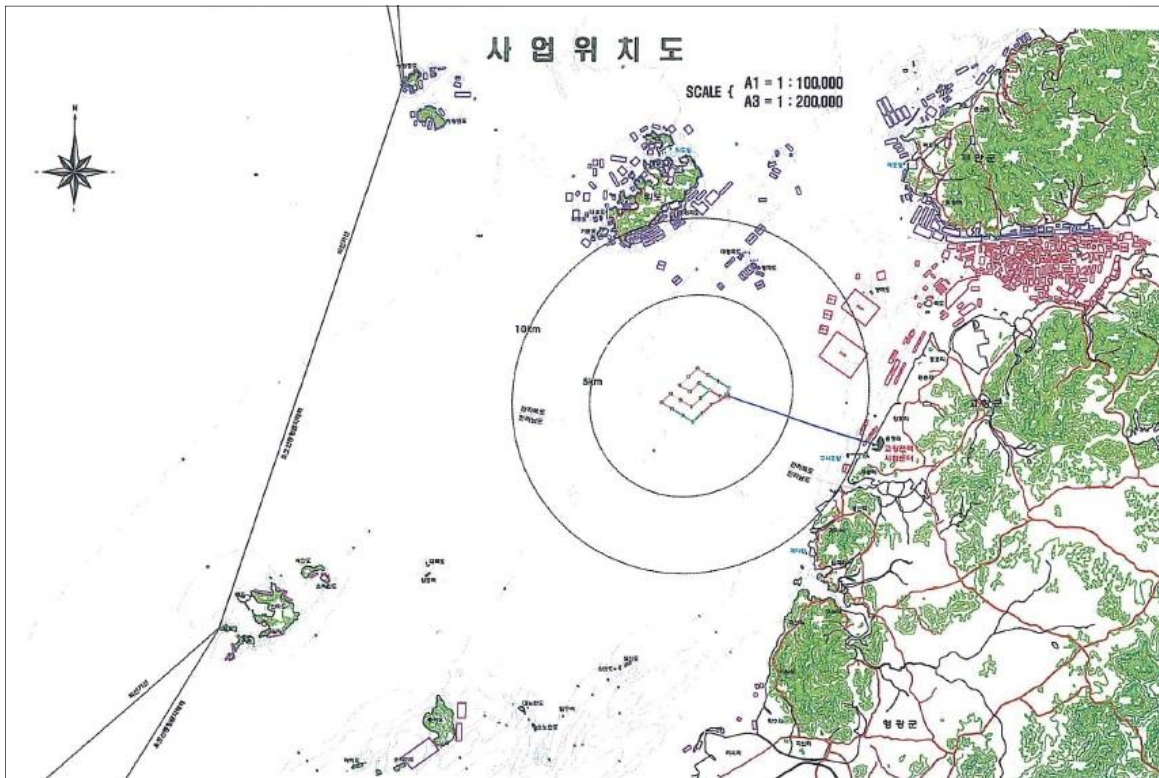
1. 기본적 사실관계

- ① 청구인(고창군)과 피청구인(부안군)은 모두 전라북도 내에서 서해안을 해안선으로 하여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② 청구인이 자신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공유수면은 [별지1] 도면표시 1, 12 사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남쪽 해역(이하 '이 사건 쟁송해역'이라 함)이다. 이 사건 쟁송해역은 청구인의 육지 연장선상에서 볼 때 앞쪽 바다에 위치함과 동시에, 피청구인 소속 도서인 위도의 남방 해역에 해당한다.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피청구인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다.



- ③ 정부는 2010. 11.경 서남해 해상에 2,500MW(2.5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7.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이하 ‘한국해상풍력(주)’이라 함)가 설립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 3. 4.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8호)를 발표하였는데, 위 승인 고시 및 그에 첨부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문’에 발전시설의 위치는 ‘전북 부안군 바다’ 또는 ‘부안군 소재 공유수면으로 표시되어 있다(아래 해상풍력단지 사업위치도 참조).



- ④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한국해상풍력(주)의 이 사건 쟁송해역을 포함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수리하고,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수리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쟁송해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사건의 개요

- 고창군 v. 부안군
- 청구취지 : 별지1 도면의 1 내지 12 사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의 남쪽 부분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침해의 원인인 피청구인의 처분 :

1. 2016. 3. 4.자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수리
2. 2017. 1. 9.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3. 2018. 1. 16.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4. 2018. 6. 26.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3. 현장검증의 취지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인정하되, 국가기본도에 해상경계선이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기본도에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전원재판부 결정(2010헌라2)에서 선례변경을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 확정 기준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해상경계에 관한 성문법이 있으면 이에 의할 것이나, “종전에 의한다”는 지방자치법을 1948년까지 소급해 보아도 해상경계에 관한 명확한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문법적 해상경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② 불문법적 해상경계는 주민들·행정청의 관행의 존재,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 법적 확신이 있으면 성립한다.

③ 불문법적 해상경계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할 것인데, 이때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그 밖에 쟁송해역의 지리적 조건(섬의 면적, 인구수, 거주현황 등),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들의 편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현장검증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새로 확정된 해상경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불문법적 해상경계 성립 여부와 쟁송해역의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편익을 수명재판관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확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4.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는지 여부
- 피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붙임 2>

검증기일 진행순서

1. 개요

가. 사건

-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접수 : 2016. 8. 29)
 - 청구인 : 고창군[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 피청구인 : 부안군[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나. 검증시간 : 2018. 9. 10.(월) 11:00 - 13:30(약 2시간 30분 예정)

다. 수명재판관 : 서기석

라. 진행순서

- ① 부안군 격포항 출발 ⇒ ② 부안군 현황 청취(위도 대리항) ⇒ ③ 해상풍력단지 현장 확인 ⇒ ④ 고창군 현황 청취(고창 구시포항)

2. 세부검증일정

가. 부안군 격포항 출발

- 부안군측 어업지도선 이용

나. 부안군 현황 청취(위도 대리항)

- 부안군수 현황 브리핑
 - 부안군청, 부안군의회 관계자 및 어업인 대표 등 약 100 여명 현장검증 참여
 -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치중·허경범 변호사 참석

다. 해상풍력단지 현장 확인

- 고창군측 어업지도선 이용

라. 고창군 현황 청취(고창 구시포항)

○ 고창군수 현황 브리핑

- 고창군청, 고창군의회 관계자 및 어업인 대표 등 약 80여명 현장검증 참여
-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지기룡·서진권·권종현 변호사 참석

검증해역 지도

